

규 칙

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『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』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.

순천시의회 의장



2019년 3월 4일

순천시의회 규칙 제42호

붙임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는 전체 의원에게 7일 전까지 사전 예고하며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이상”을 “이내”로 하고, “없다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대표자에게”를 “정당한 채권자에게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하며,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등록신청) ①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<u>경우</u> 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3조(등록신청) ① ----- ----- <u>경우</u> <u>에는 전체 의원에게 7일 전까지 사전</u> <u>예고하며</u>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원은 2개 <u>이상</u>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<u>없다</u> .	③ 의원은 2개 <u>이내</u>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<u>있다</u> .
제10조(경비의 지출)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경비를 <u>대표자에게</u> 지급한다.	제10조(경비의 지출) ----- ----- ----- <u>정당한 채권</u> <u>자에게</u> -----
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사용내역서 제출 등)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지원 통보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	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사용내역서 제출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한다.